

[별표 2](2014.03.14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2014.03.14 개정)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008.4.24>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4.24>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삵제 <2008.4.24>
32. 동력휠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삵제 <2008.4.24>
38. 농 선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벼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2012.03.14 개정)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덤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2012.03.14 신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2012.03.14 신설)
47.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 (2012.03.14 신설)